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30 선고 2018가단2440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

담당변호사 임성도, 이원표

피고(선정당사자)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동인

담당변호사 임화선, 이승재

변론 종결 2019. 3. 12.

판결 선고 2019. 4. 30.

주 문

1. 서울 중구 E 대지 526㎡ 중 망 F 명의의 234분의 75 지분에 관하여,

가. 원고 A에게 그 중 159분의 86.7 지분을,

나. 원고 B에게 그 중 159분의 47.3 지분을,

다. 원고 C에게 그 중 159분의 25 지분을 각 이전하되, 선정자 G은 3/11, 피고(선정당사자) D,

선정자 H, I, J은 각 2/11 지분으로 2018. 6. 7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
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선정자 G, 피고(선정당사자) D, 선정자 H, I, J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,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 이행을 구함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서울 중구 E 대지 526㎡(약 159평, 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원고 A앞으로 234분의 86.7, 원고 B 앞으로 234분의 47.3, 원고 C 앞으로 234분의 25, 망 F앞으로 234분의 75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.

나. 주식회사 K(이하 'K'이라 한다)은 1974. 12. 30.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서울 중구 L 대지 234평(이하 '종전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망 F은 1976. 2. 18. 종전 토지상의 가옥 4채 중 1채를 매수하였는데 K은 1976. 2. 25. 그 대지에 상응하는 면적인 종전 토지 중 234분의 75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종전 토지 중 서울 중구 M 대 75평이 1977. 5. 6. 분할되어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나머지는 234평에서 75평을 뺀 이 사건 토지가 되면서 망 F이 234분의 75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 그대로 전사되었다.

라. 망 F은 1977. 11. 17. N에게 1977. 11. 16. 매매를 원인으로 위 주택 및 서울 중구 M 대 75평에

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망 F의 사망으로 선정자 G은 3/11, 피고(선정당사자) D, 선정자 H, I, J이 2/11을상속하였다.

바. 이 사건 토지 중 망 F의 위 지분(234분의 75) 등기 외에 원고 A 앞으로 234분의 86.7, 원고 B 앞으로 234분의 46.3, 원고 C 앞으로 234분의 25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,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공유등기명의 자 중 일부의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, 특정인의 구분소유 하에 있는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등기명의자 앞으로의

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다27952 판결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F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망 F을 상속한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, 이 사건 토지 중 망 F의 명의로 되어 있는 234분의 75지분에 관하여, 원고 A에게, 159분의 86.7 중 선정자 G은 3/11, 피고(선정당사자) D, 선정자 H, I, J은 각2/11 지분에 관하여, 원고 B에게, 159분의 47.3중 선정자 G은 3/11, 피고(선정당사자)D, 선정자 H, I, J은 각 2/11 지분에 관하여, 원고 C에게 159분의 25 중 선정자 G은 3/11, 피고(선정당사자) D, 선정자 H, I, J은 각 2/1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장부분 최후송달일인 2018. 6. 7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
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용호

선 정 자 명 단

1. D
2. G
3. H
4. I
5. J. 끝.